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3659 제출연월일 : 2024. 9. 4. 제 출 자 : 정 부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정당의 조직, 창당준비위원회, 후원회,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이나 선거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"타인"을 "다른 사람"으로, "정당"을 "정치단체"로 한다.

-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(이하 "정치단체"라 한다)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.
- 1.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 및 당헌・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
- 2. 「정당법」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
- 3.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른 후원회
- 4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선거운동기구
- 5.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, 그 선거의 당선인 · 후보자 · 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혂 제32조의3(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제32조의3(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) ① 사회복무요원은 운동 금지) 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 다음 각 호의 단체(이하 "정치 단체"라 한다)의 결성에 관여 에 가입할 수 없다. 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. 1. 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 및 당헌 · 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2. 「정당법」에 따른 창당준 비위원회 3.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른 후 원회 4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선 거운동기구 5.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 거로 취임하는 공무원, 그 선 거의 당선인 · 후보자 · 예비 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 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단체 ② 사회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~ 4. (생 략)
- 5. <u>타인</u>에게 <u>정당</u>에 가입하게 5. <u>다른 사람--- 정치단체</u>--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
- ③・④ (생 략)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③・④ (현행과 같음)